##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99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복기왕·김태선·채현일

장철민 · 최기상 · 박은정

이기헌 • 박용갑 • 임미애

이연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 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 인으로 위촉하며, 위원 결격사유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유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무총리는 희생자 유가족(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단체가 추천하고 제7조 각 호에 준하는 자격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인을 위원회 참관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 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임직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국무총리 소속으로</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② 국무총리는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국토교통부장관이</u> 위촉한다.	<u>국무총리가</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국무총리는 희생자 유가족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로 인		
	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를 말한		
	다) 단체가 추천하고 제7조 각		
	호에 준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을 갖춘 자 1인을 위원회 참관 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7.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 당하였던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